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6

2023년 4월 25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이병도 의원 외 11인
2.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3. 상정일자 :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25일 상정 · 수정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모든 학생이 보편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와 기본이념을 명시함(안 제2조, 제3조)

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시설과 공간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3월 29일 이병도 의원 등 1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656호로 발의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은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제품 및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모든 구성원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도 불립니다[1].

○ 현재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2] 「장

1) 행정안전부(2018).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 책자.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그리고 이에 근거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서 의미하는 무장애(Barrier Free: BF)의 개념은 주로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설물을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건축물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무장애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바, 최근에는 공공시설 디자인의 방향이 무장애를 넘어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3)]

○ 이에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사업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지난 2018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표-1]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제(개)정일
자치단체	경기도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2023.1.2..
	경상남도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9.6.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2021.2.2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2020.5.1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2021.7.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21.12.31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조례	2018.4.10

2) 최혜영의원 등 21인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발의(2022.1.7.)하였으나 현재 계류중임(의안번호: 2114290).
3)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최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변화하는 건축 디자인 추세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사용하기 쉽고 편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기본이념,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적용범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제13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제14조에서 협력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 및 체계 등에 있어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는 동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과 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4]에 따른 건축·대수선·리모델

4)「건축법」
제2조(정의) 1.~7. 생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링 하는 교육시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을 하는 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동 조례안 제2조에 따른 '건축' 은 건축물을 신·증·개축 등을 하는 것이고, '대수선' 은 건축물의 기둥, 보,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등을 하는 것이며, '리모델링' 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개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적용 범위는 시설을 건축하는 등의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시설을 수선·변경하는 정도의 공사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례도 있으나, 일상에서 항상 사용하는 출입구 버튼,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손잡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이 다수 적용되고 있는바,

안 제6조가 신·증·개축 등의 대규모 사업 이외에 시설의 구조나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 의 개념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28. 생략

[그림-1] 출입구 버튼 및 손잡이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사례

○ **한편, 안 제6조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도 동 조례안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5] 사립학교의 시설공사 설계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이미 마련하고 있고[6],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디자인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 적용범위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12.19., 법률 제15994호, 2018.12.18. 일부개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 ③ (생략)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6)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

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학교에 배포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배포받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점검표를 교육환경 조성·관리 및 기존건물 유지 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건축분야에 도입된 시기는 20여년이 지났으나[7], 여전히 이에 대한 기본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바, 실제 시설사업 설계 과정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충분히 적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이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서울시 및 경기도 등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시설 사업 시 각 시설사업의 종류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를 가로(보도, 차도), 공원·광장, 공공건축물(접근공간, 진입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 등 총 3개 부문, 7개 영역, 29개 세부 항목을 설정하고, 체크리스트는 29개 세부 항목별로 확인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시행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제 시설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추진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바,

안 제9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 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7)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은 1997년 미국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 교수가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을 제시하면서 시작됨.

[표-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

부문	영역	세부항목	주요내용
가로	보도	보행안전구역	보행공간
		차량진입구역	대지 내 주차장 진입구역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전면부 영역, 공개공지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상충구간, 안전시설, 이용편의시설
		시설물 구역	보도 폭에 따른 설치 기준, 보도 폭에 따른 포장 기준, 시설물, 안내시설, 여객시설 정류장
	차도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횡단보도	횡단보도 설치, 진입부, 고원식 교차로, 교통성
		속도저감 방안	차도 폭 좁힘, 도로포장 변화, 과속방지턱
공원·광장		진입공간	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이동공간	산책로
		위생공간	화장실
		편의공간	편의시설, 안내시설
		휴게공간	휴게구역, 놀이터
공공 건축물	접근공간	대지 출입구	위치, 안내
		보행접근로	유효폭과 높이, 바닥마감, 보차분리, 유도 및 안내
		주차장	위치,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공간	주출입구	위치 및 전면공간, 주출입문, 유도 및 안전
		로비	접수·안내데스크 및 유도·안내
	이동공간	복도	유도폭 및 보행장애물, 마감, 손잡이, 유도 및 안내
		실내출입문	형태, 문의 구조, 유도 및 안내
		경사로	형태 및 구조, 안전 및 안내
		계단	형태, 구조, 안전 및 식별
		엘리베이터	승강로비, 구조, 조작설비, 유도 및 안내
		에스컬레이터	구조, 승강장
		방재 및 피난시설	방재계획, 경보 및 피난시설
	위생공간	화장실	접근 및 안내, 마감 및 조명, 안전 및 범죄예방, 대변기부스, 위생기구, 영유아 설비
		다목적 화장실	기능 및 구조, 설비
		수유실	위치 및 접근, 구조 및 설비
		욕실, 샤워실, 탈의실	일반사항, 욕실, 샤워실, 탈의실

4)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검토(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안 제11조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8]을 자문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디자인만을 자문하는 위원회는 없으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디자인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디자인에 대한 사항만을 심의·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와 내용, 재원조달 계획, 사업기간, 발주방식 등 공공건축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바, 유니버설디자인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자문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만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이에 대한 시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다만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중 '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위원회는 없으며,**

---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명칭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 라고 할 경우 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위한 위원회로 오인될 수 있는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 의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달리 도시계획·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련성이 적으므로 위원수를 ‘15명 이내’ 에서 ‘11명 이내’ 로 수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5353.,2023.4.7.).

○ 그러나 안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수는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위원수가 아닌 위원수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고 그 위촉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그 대상범위를 고려할 경우 보다 폭넓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안 제12조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기타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제3항은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 ‘위원회’ 규정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7조제3항 중 인용된 ‘제10조’ 는 ‘제11조’ 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5353, 2023.4.7.).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 안 제7조제3항의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함.

○ 안 제11조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로 수정함.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56

제안연월일 : 2023년 4월 25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7조제3항(기본계획 수립)에 인용된 조문 중 ‘제10조’는 ‘제11조’를 오기(誤記)하였기에 안 제7조제3항의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함.

○ 안 제11조(위원회)는 위원회의 명칭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명칭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로 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교육하는 위원회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11조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로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중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함(안 제7조제3항).

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로 수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 정 안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략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원안과 같음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원안과 같음
제11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학생이 보편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사람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되는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 및 촉진·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관련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 적용을 위한 기술적 조언 및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청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공간 등에 적용한다.

1.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과 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수선·리모델링 하는 교육시설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하는 교육시설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공간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주요 교육시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학생 인식개선과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가이드라인)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학교에 배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을 조성·관리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점검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기존 교육환경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점검표에 적합하도록 지속적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시설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교육 등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업)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사, 연구, 홍보 등 사업
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 교구, 교재 개발 및 배포 사업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

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협력과 참여 등)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 기관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듣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